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1차 국토교통위원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방식 변경〉

■ 주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008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주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008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방식 변경(안 제7조 등)	3

□ 주호영의원 대표발의(221900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주호영의원 등 19인
2. 제 안 일 : 2026. 5. 18.
3. 회 부 일 : 2026. 5.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신공항을 건설하여 기부하고 기존 공항 부지를 넘겨받아 이익을 창출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사업,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국방부장관이 아닌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이하 “대구시”) 사업으로 추진하려면 대략 10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하는 등 사실상 차입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함. 이러한 재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며, 해당 사업이 앞으로의 대구시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

한 특별법」에 따른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아닌 국가 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업 주체·방식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업의 일관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의2 신설 및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방식 변경(안 제7조 등)

개정안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의 방식을 ‘기부대양여’(신공항을 건설하여 기부하고 기존 공항 부지를 넘겨받아 이익을 창출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 국가 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업 주체·방식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7. (현행과 같음) 8. ----- ----- -----따른 지원계획을----- ----- -----.
제7조(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	제7조(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현행	개정안
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은 <u>중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u> 시행하고,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u>국토교통부장관</u>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u>공항개발사업</u>을 시행하려면 <u>국토교통부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u>국토교통부장관의</u> 허가를 받아야 한다. <u><신 설></u> <u><신 설></u> ③ (생략) ④ <u>중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u> 군 공항 이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를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	① ----- -----<u>국방부장관이</u>----- ----- -----. ② <u>국방부장관</u>----- ----<u>군 공항 이전사업</u>----- -<u>국방부령으로</u>-----<u>국방부장관</u>-----. ③ <u>국토교통부장관</u>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u>공항개발사업</u>을 시행하려면 <u>국토교통부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u>국토교통부장관의</u>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u>국방부장관은</u> 제1항에 따른 <u>군 공항 이전사업</u>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중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u>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⑥ ----- <u>제4항 및 제5항에</u>----- ----- ----- ----- -----<u>제4항에 따라</u> 위탁받은 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를 지정하

현행	개정안
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u>작성하여</u> 국방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승인·고시에 관한 절차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다. ②·③ (생략) 제10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국방부장관이 제9조제1항에 <u>따른 실시계획의 승인</u>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해제·결정·동의 및 계획의 수립·변경 등 (이하 “인가·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u>승인이</u>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16호에 대해서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	<u>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제5항에</u>----- -----. 제9조(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① ----- ----- ----- -수립하여야 하고,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u>작성하여</u>-----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 -----<u>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승인</u>----- ----- ----- ----- ----- ----- -----<u>수립 또는 승인이</u>----- ----- ----- -----.

현행	개정안
를」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한정한다. 1. ~ 22. (생략) ②·③ (생략) <u><신설></u>	----- -----. 1. ~ 2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u>제13조의2(종전부지의 양여 등) ① 국</u> <u>방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으</u> <u>로 군 공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부</u> <u>지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용도폐</u> <u>지 또는 사용승인 신청 등 필요한</u> <u>조치를 한다.</u> <u>② 「국유재산법」에 따라 용도폐지</u> <u>를 한 때에는 종전부지를 인계받은</u> <u>「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에 따른</u> <u>총괄청은 인계받은 종전부지의 효율</u> <u>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u> <u>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해</u> <u>당 종전부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u> <u>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u> <u>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u> <u>있다.</u>
제20조(정부의 재정 지원) ① (생략) ② 국가는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	제20조(정부의 재정 지원) ① (현행과 같음) <u><삭제></u>

현행	개정안
<u>양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u>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규모·절차 및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u>국토교통부장관의</u>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보고·검사 등) ① <u>국토교통부장관은</u>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행자에게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군공항 이전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8조에서 같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33조(시정명령 등) <u>국토교통부장관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삭 제> 제31조(권한의 위임) -----<u>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의</u>----- ----- ----- ----- ----- -----. 제32조(보고·검사 등) ① <u>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u>----- -----<u>제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에</u>----- -----<u>건설사업에</u>-----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시정명령 등) <u>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u>-----

현행	개정안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u>외의</u> 통합 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2. (생략) <u><신설></u> 3. (생략) 제34조(허가 등의 취소) ① <u>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신 공항 건설사업 시행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 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u> 1.·2. (생략) <u><신설></u> 3. (생략)	----- -----<u>및 국방부장관 외의</u>----- ----- -----. 1.·2. (현행과 같음) <u>2의2. 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국 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공사 를 끝낸 시설이 실시계획 승인 내 용과 다른 경우</u> 3. (현행과 같음) 제34조(허가 등의 취소) ① <u>국토교통부 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 관 및 국방부장관</u>----- ----- ----- ----- ----- -----. 1.·2. (현행과 같음) <u>2의2. 제9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u> 3.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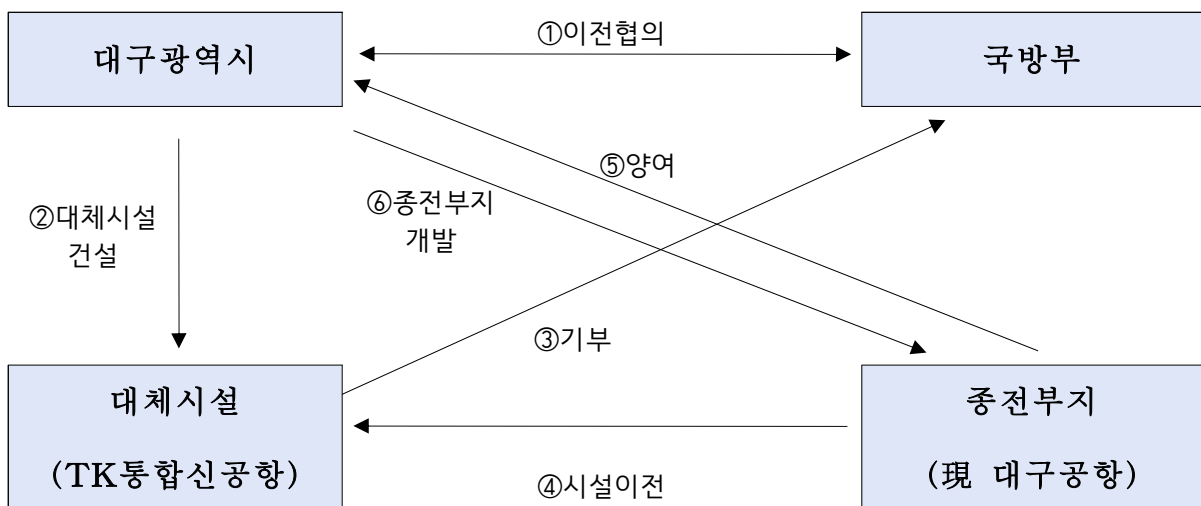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u><신 설></u> 4. (생략) 5. 제33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u>국토교통부장관이</u> 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u>국토교통부장관은</u>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u>제1항에</u>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u>정한다</u>. 제35조(과징금의 부과) ① <u>국토교통부장관은</u>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제34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승인의 효력 정지 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같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3의2. 제9조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또는 실시 계획을 위반한 경우 4. (현행과 같음) 5. ----- <u>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u> <u>이</u>----- ----- ② <u>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u> ----- ----- -----. ③ <u>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u>----- ----- -----정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과징금의 부과) ① <u>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u>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방부장관----- ----- ----- ----- ----- ----- ----- -----

현행	개정안
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
②·③(생략)	②·③(현행과 같음)
제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관련 사전 절차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완료한 경우 이 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해당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가. 검토의견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이전사업의 방식 등)¹⁾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기부 및 양여의 특례)²⁾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군 공항을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군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이루어짐.

【 대구경북통합신공항사업(군항) 기부대양여사업 구조 】



1)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①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제55조(양여)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① 제3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한 국방·군사시설(해당 시설의 이용·유지 또는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기존 국방·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승인받은 해당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및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과 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현황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은 대구동구에 위치한 K2 공군기지와 대구 국제공항을 대구 군위군, 경북 의성군 일원으로 통합이전하여 신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군공항 이전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구시와 국방부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며, 민항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군공항의 활주로를 연장하고 일부 구역에 터미널을 건설하는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임.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 개요 】

- (위치) 대구 군위군 소보면 및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원
(전체 552만평, 약 18.2km² / 민항 41만평, 약 13.4km²)
- (사업내용) 군 활주로 추가(756m 증, 2,477m→3,500m), 터미널, 계류장 등 민항 건설
- (사업기간/사업비) '24~'30 / 약 14.2조원(민항 2.7조원, 군항 11.5조원)
- (사업방식) 군항기부대양여 방식* / 민항재정사업 방식
- * 대구시가 이전부지에 군공항 건설 및 국방부 기부 후, 종전부지를 양여받아 개발하는 방식
- (항공수요) '60년 기준 여객수요 1,265만명, 화물수요 23만톤

※ 자료 : 국토교통부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 추진 경과 】

- '16.8 :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방식 결정(대구공항 통합이전 TF)
- '20.8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대구 군위, 경북 의성) 확정
- '22.9 : 군공항 이전 기본계획 수립(대구시·국방부)
- '23.4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23.8, 시행)

- '23.9 : 민간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완료
- '23.10 :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23.12 : 민간공항 기본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4.12 : 민간공항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 '25.1 : 군공항 사업계획 승인
- '25.12 : 민항 총사업비 협의 완료 및 민항 기본계획 수립·고시

※ 자료 : 국토교통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당시, 종전부지 매각 전에 이전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방식과 달리 기부대양여 방식은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용이한 점,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지 개발에 주도권 및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논의를 거쳐 군 공항 이전사업 방식은 특별회계방식이 아닌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결정되었음.³⁾

다만,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은 초기 비용을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하여야 하고 종전부지 개발이익은 사업후반부에 실현되는데,

3) 제19대국회 제311회(정기회) 제2차 국방위원회(2012.9.24.), 제311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2012.11.14.), 제311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12.11.16.)

특히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군 공항 이전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역량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 악화, 사업 장기화, 종전부지 미분양 등 모든 위험을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2025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재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직속 TF 구성을 건의하고 가시적인 조치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⁴⁾ 이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채택된 바 있음.⁵⁾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군항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대구광역시는 군 공항 이전은 일반적인 부대 이전 사업보다 10배 이상의 규모에 해당하며 현재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모든 위험이 사업시행자인 지방정부에 집중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국가가 이를 해소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국가가 균형성장 측면에서 직접 부지를 활용·개발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등 국가가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비교하여 지역 간 형평성 있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4) 제22대국회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2025.10.13.

5)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026.2.10. 국토교통위원회 의결, 2026.2.12.본회의 의결)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재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대통령실 직속 TF (기획재정부 포함) 구성을 대통령실에 건의하고, 이에 따른 가시적인 조치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에 개정안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부대양여방식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아닌 국방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사업주체·방식 변경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는 2024년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SPC)를 구성하려 했으나 높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금리, 자금조달 규모의 과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SPC 구성이 무산되어 대구광역시가 직접 건설하는 공영 개발방식으로 전환하였고,⁶⁾ 사업계획승인(2025.1.) 이후 대구광역시-중앙정부 간 자금조달 단계에서 중앙정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6) 대구정책브리프,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사업의 국가적 편익과 지원 필요성」, 대구정책연구원, 2026.4.24.

【 K2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절차 】

이 전 건 의 (특별법 제 4조)	중전부지 지자체장(‘이하’대구시장)이 군 공항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대구시장→국방부장관)	‘14. 5. 30.
↓		
이 전 건 의 검 토 (시행령 제 4조)	국방부 장관은 이전건의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대구시장에게 통보(국방부장관→대구시장)	‘16. 8. 30.
↓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특별법 제 4조)	- 국방부장관은 군사작전 및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 · 군위 우보면, 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	‘17. 2. 16.
↓		
이전후보지 선정 (특별법 제 5조)	- 국방부장관은 예비이전후보지 중에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후보지를 선정 · 이전후보지 선정절차와 기준 등 선정위원회가 심의	‘18. 3. 14.
↓		
이 전 주 변 지 역 지 원 계 획 수 립 (특별법 제 11조)	- 국방부장관과 대구시장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대구시장은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을 수립(선정위원회 심의·확정)	‘19. 12. 17.
↓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 립 공 고 (특별법 제 7조)	-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을 위해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 · 이전후보지,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포함	‘19. 12. 19.
↓		
주 민 투 표 실 시 / 유 치 신 청 (특별법 제 8조)	- 국방부장관이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 -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유치 신청	‘20. 1. 21. ‘20. 1. 22.
↓		
이 전 부 지 선 정 (특별법 제 8조)	국방부장관은 유치신청을 한 지자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 * 의성공동합의문 발표(‘20. 8. 25.)	‘20. 8. 28.
↓		
기 본 계 획 수 립 (훈령 제 17조)	국방부장관은 중전부지단체장이 수립한 이전사업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침	‘22. 9. 23.
↓		
기 부 대 양 여 심 의 (훈령 제 21조)	국방부장관은 기부 대 양여심의위원회(기재부)를 거쳐, 중전부지 지방자치단체장과 합의각서를 체결	‘23. 8. 14.
↓		
합 의 각 서 체 결 (훈령 제 21조)	국방부장관은 중전부지 지방자치단체장과 합의각서 체결	‘23. 11. 20.
↓		
사 업 시 행 자 지 정 (훈령 제 23조)	- 국방부장관은 중전부지 지방자치단체장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 「국방·군사시설사업법」 제 3조	‘23. 12. 8.
↓		
사 업 계 획 승 인 (훈령 제 24조)	사업계획 수립(사업시행자) 및 승인(국방부장관) / · 「국방·군사시설사업법」 제6조	‘25. 1. 21.
↓		
이 전 사 업 시 행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이전부지 수용 및 보상(사업시행자) · 「국방·군사시설사업법」 제5조 - 실시계획 수립(사업시행자) 및 승인(국방부장관) / · 「국방·군사시설사업법」 제6조	‘27. ~

※ 주) 특별법「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훈령「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이처럼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종전 부지의 매각 가능성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업비 조달이 지연되거나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특히 K2 군공항과 같은 대규모 복합기지가 이전되는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사업(군항)의 경우 약 11.5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장기·대규모 사업으로 비용회수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부동산 경기 침체 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음.

이에 개정안과 같이 국방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국가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재정적 부담과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한편, 장기적·대규모 군 공항 이전 사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 방식을 기부대양여 방식이 아닌 국방부 직접 사업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안, 의안번호 제2219009호)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소관 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논의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국가사업 전환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유사 기부대양여 사업의 국가사업 전환 요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개정안과 관련한 국방부 및 기획예산처의 이견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나. 관계기관 및 단체 의견

1) 국토교통부

군 공항 이전 사업 시행방식 변경은 군 공항 이전의 기본법인 「군 공항 이전 특별법」 논의·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TK통합신공항의 사업시행자 변경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 논의 결과에 따라 소관부처인 국방부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이 필요하여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대구광역시

국방·안보에 관한 군공항 이전은 원칙적으로 국가사무로, 군 공항 이전은 일반적인 부대 이전 사업보다 10배 이상 규모에 해당하며, 현재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막대한 자원 조달에 따른 과도한 금융비용 및 사업 장기화 등 모든 리스크가 사업시행자인 지방정부에 집중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국가가 이를 해소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여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임.

K-2 군 공항으로 수십년 동안 전국 최대 소음 및 고도제한 피해 등 지역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국

가가 균형성장 측면에서 직접 부지를 활용·개발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등 국가가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비교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 간 형평성 있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3) 국방부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전제로 형성된 현행 법체계(법률, 하위법령, 훈령 등) 모두를 전면 제·개정하여야 하는바 관계부처 및 관련 지자체 모두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데 장기간 소요가 불가피하고, 대구·광주·수원의 경우를 합하면 약 수십조 원에 달하는 예산소요가 예상되며, 사업에 이미 투입된 비용의 처리 문제 등 사업 방식의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 및 각종 이해관계 교차 등으로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과 사업 장기화가 우려됨.

‘13년 법 제정 당시 군 공항 이전사업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은 국회, 지자체, 관계부처 등이 모두 합의한 결과물이며(당시 국회 논의에 따르면 ① 이전 이유가 지자체 요구라는 점, ② 민간자금을 조달하면 소요재원 확보가 더 용이하다는 점, ③ 종전부지 개발에 있어 지자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 특히 대구 군 공항의 경우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상황에서 다시 사업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자칫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개정안에 불수용한다는 입장임.

4) 기획예산처

'97년 이후 지방정부 요청으로 군사시설을 이전할 경우 모두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해왔으며, 특히 재정사업 전환 시 현재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 중인 사업까지 재정사업으로의 변경 요청이 우려되며, 지방정부의 과도한 군사시설 이전 요구가 발생할 수 있어 개정안에 불수용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80
